

【 8 】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9. 6. 19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개정이유

○ 증전에는 급수의 개전, 폐전, 명의변경 등을 신청할에 있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전화 및 구슬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수도사업자 등이 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“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함.(안 제18조제1항)

나. 급수 등이 변경 신청에 있어 방문 신청하던 것을 “전화 및 구슬로도 신청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(안 제18조제2항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 안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중 “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전항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 규정에 의한”으로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전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슬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수도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신고)(1)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<u>보고하여야 한다.</u>	제18조(신고)(1)----- ----- <u>신고하여야 한다</u>
② <신설>	② 전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수도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----- -----

제17연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수도급수조례

③특수가설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4조(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) ①군수는 다향의 수도사용자에게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.

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9조 및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5조(급수공사의 직권시행)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의 공사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②전항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6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

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

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동의 이의신청,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⑤제2항의 하자보수 보증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급 수

제17조(수도의 사용)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.

제18조(신고)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할 때
2. 급수장치의 파손, 누수,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

3.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
 4.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
 5.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
 6.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
 7.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~~개~~^{하게}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급수의 판매금지)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.

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

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20조(소화용급수의 사용) ① 사설 소화용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통합한다.

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21조(수도사용자 등의 책임)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또는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.

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, 고용인, 동거인, 기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차분에 부속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

제23조(급수정지 및 사용제한)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